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47<sup>th</sup> July 15, 2012

- ▶ WHERE IS GRACE CHANG?:  
THE ROAD NOT TAKEN ..... 2
- ▶ ABOUT WRITERS ..... 2
- ▶ COVER STORY: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제개혁 방안 ..... 3
- ▶ FTA NEWS:  
여전히 넓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 4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내용 개관 ..... 5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7
- ▶ CUSTOMS PRECEDENT ㉔ ..... 7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

E-mail 신청: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http://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http://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The Road not Taken



장승희  
대표 관세사

Rober Frost(1876-1953)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중략).....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어린시절, 별 의미도 모르며 외웠던 시가 최근에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 쉬지 않고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 않았던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선택하여 가고 있는 이 길은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Cover Story 는 **최중학 서울대학교수의 '미국의 증세논란과 세계개혁방안 II'** 입니다. 6 월호에 이어 세계경제와 미국 및 한국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경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임에도 한국은 EU, ASEAN, 미국 등 8 개국과 FTA 가 발효되었고 콜롬비아 및 터키와도 FTA 를 체결하는 등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FTA 가 관세장벽을 없애어 무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제도라면, AEO 는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미국, 일본등과의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체결되었고 중국과도 AEO 의 MRA 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관세청의 **임창환 사무관께서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知彼知己는 百戰不殆라고 합니다.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FTA 및 AEO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려운 세계경제여건에서도 발전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 않았던 길'도 언젠가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 결국은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계개혁 방안 II



최 중 학 교 수  
([acchoi@snu.ac.kr](mailto:acchoi@snu.ac.kr))

PROFILE

- 現)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前)홍콩과기대학 교수  
6년 연속 최고강의상 수상
- University of Illinois 박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수석졸업
- 저서  
숫자로 경영하라 I, II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 매일경제 선정  
한국의 경영대가 25인

FTA News-

여전히 넓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남 충 만 관세사  
([cmnam@customsservice.co.kr](mailto:cmna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턴트
- 무역협회 아카데미 강의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내용 개관



임 창 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청 심사정책국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부산국제우편세관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 선 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한국무역협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경기 북서부 전담 관세사

Customs Precedent ㉞

특정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김 영 훈 관세사  
([kimyh@customsservice.co.kr](mailto:kimyh@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모델

Cover Story

# 미국의 증세 논란과 세계개혁 방안 II

## 미국의 증세논란과 우리의 교훈 - II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폭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2010 년경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자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조직인 '티파티(tea party)' 조직이 탄생하여 전국적인 조세저항 운동을 시작했다.<sup>1</sup> 이 운동은 중산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 방만한 지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가 의료 보험개혁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들은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아예 의회에 직접 뛰어들어 오바마의 정책을 저지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간 최소 3 천억 달러, 최대 1 조 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추가적인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증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

무명이었던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화당 측 경선에 출마하여 기존의 정치인들을 제치고 대거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다. 그리고 벌어진 2010 년 의원 선거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사상 최고의 참패를 한 이 선거에서 티파티는 수십 명의 의원들을 당선시켰다. 이들은 기존 공화당의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공화당의 지도부의 정책에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 세제의 수정 방향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대규모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일부 깨닫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국제청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증세 없이 세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미국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www.amazon.com)의 경우 본사나 배송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책을 구입하면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아마존이 아니라 동네에 위치한 서점에서 똑 같은 책을 구입하면 소비자는 판매세를 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아닌 전통적인 소매 업체들은 아마존이 불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인터넷

업체의 세금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터넷 업체로 몰려들게 되며, 그 결과 전통적인 소매업체들이 몰락함으로써 고용도 줄어들고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 정부는 인터넷 업체에 대한 이런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몇몇 주 정부들은 벌써 아마존에 대해 과세를 시작했다. 그러자 아마존은 해당 주에 위치한 배송센터나 사무실을 폐쇄하는 식으로 저항을 했다.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자 아마존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아마존도 항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 회사가 소득세를 지불한 후, 남은 소득 중 일부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불된다.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지불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들이므로, 주주들은 한번의 소득에 대해 두번 세금을 내니 이중과세인 셈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회사 소득세가 없이 개인 소득세만 지불한다. 따라서 비슷한 소득이라면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내는 셈이다. 따라서 이점을 수정해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sup>2</sup>

## 다섯 가지의 세수 향상 방안

셋째,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이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올린 이익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즉 해외에서 올린 이익이 해외에 그대로 남아서 재투자되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세법을 이용해서 교묘한 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별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은 외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세율을 낮춰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어디에서 올린 소득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과세한다. 따라서 미국도 해외 소득에 대해 일부 과세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넷째, 여러 명목의 소득공제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일부 소득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건에 맞는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베푸는 셈이다. 선심성 정치인들이 항상 법을 개정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자 수와 금액을 계속 늘려왔다. 이를 모두

없애거나 대폭 줄임으로써 세금을 늘릴 수 있다.<sup>3</sup>

다섯째, 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각시 발생하는 투자이익(주식 최초 매입금액과 매각금액에 대한 차이)에 대한 현행 세율은 15% 이다. 이를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30% 대로 올리는 것이다.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투자이익에 대한 세율을 낮춘 것인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주로 투자이익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에게 대한 특혜 측면이 있다.<sup>4</sup>

##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건 미국의 경제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빌 뿐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달러를 계속해서 뿌린다면 미국은 빠르면 10 년~20 년 이면 파산하고 세계는 대혼란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1997 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위기의 규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제 2 의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런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모두에게 계속 나누어 줄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고 하지만, 국가부채 계산에서 빠진 부채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심성 정책들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 년이나 20 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각종 연기금 들은 앞으로 십여년 정도면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앞에서 설명한 고기를 잡는 방법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밖에 없다. 돈을 뿌리는 정책은 잠시 후 우리에게 빛으로 돌아올 뿐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우리가 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별로 염려하지 않고 현재의 표를 얻기 위해 공짜를 남발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물론 역시 자녀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공짜로 나눠주는 유혹에 손쉽게 빠져드는 국민들도 문제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그 정치인을 뽑아주는 국민들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sup>1</sup> 티파티 라는 이름은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된 '보스턴(Boston) 차(tea 사건)'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미국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던 영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마시던 차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분노한 보스턴시의 시민들이 차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해 와서 하역을 위해 보스턴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영국 상선에 물러가 차를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가 미국에 군대를 파병하여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을 발생시켰던 민간 조직이, 당시 사건을 불렀던 명칭이 바로 티파티(tea party)였다. 또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냈다(taxed enough already)'라는 뜻으로도 통한다.

<sup>2</sup>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세 보다 낮지만 우리나라는 양자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국 배당을 받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보다 두 배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즉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기 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몇 명이서 동업을 하는 것이 세제상으로 훨씬 유리한 셈이다. 국내에서는 또한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봉급생활자가 봉'이라는 말이 생긴 셈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과 소득세 징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sup>3</sup>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소득공제의 종류가 더 많고 소득공제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그 결과 근로소득자 중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외국의 경우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결과 국내의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10% 정도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액의 90%를 납부할 정도다.

<sup>4</sup> 우리나라는 투자 후 주식 매각을 통해 거둔 이익에 대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30%의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지분이 3% 미만인

소액주주들은 면세다. 지분이 3% 미만인 경우라도 투자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현재 국내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지만, 그 경우 주식투자 손실을 본 경우 과거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투자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둔다 해도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 종 학  
[acchoi@snu.ac.kr](mailto:acchoi@snu.ac.kr)

## FTA News

## 여전히 넓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우리나라는 이번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총 9개의 FTA 협정을 발효(및 발효예정)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중국, 일본, 터키, 호주 등과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계속적으로 넓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아시아국가로는 최초로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으며, 중남미국가 중 페루,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8개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총 9개의 FTA 협정을 발효(및 발효예정)하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인구 4500만명, GDP 3200억

달러이며, 국토는 한반도의 6배에 달하고, 석유·석탄·니켈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멕시코에 이은 콜롬비아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1년에는 12억달러 정도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품목 중 56%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며, 그 다음으로 원유, 합금철, 유연탄, 동과 및 스크랩 순으로 수입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자원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

교역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번 FTA의 타결로 인하여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 출범 당시 정부의 예상은 GDP는 향후 10년간 5.62%▲, 15년간 연평균 4,260억▲, 최대 25만 3천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한미 FTA의 경우 GDP 5.66▲, 고용 35만명, 대(對) 세계 무역수지 27.7억달러(향후 15년간 연평균)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FTA의 기대효과는 무척 높으며, 현재 EU 재정위기의 가속으로

□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FTA 국가는 다음과 같다.

Status	협정	대상국가	발효일
발효	칠레	대한민국 / 칠레	2004.04.01
	싱가포르	대한민국 / 싱가포르	2006.03.02
	EFTA	대한민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6.09.01
	ASEAN	대한민국 /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	2007.06.01
	인도(CEPA)	대한민국 / 인도	2010.01.01
	EU	대한민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등 27개국	2011.07.01
	페루	대한민국 / 페루	2011.08.01
	미국	대한민국 / 미국	2012.03.15
발효 예정	콜롬비아	대한민국 / 콜롬비아	2013.상반기
협상진행		중국, 일본, 터키, GCC(6개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캐나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	기존 관세율	협정 관세율	특징
자동차(승용차)	35%	10년간 단계적 철폐	전체 수출품목의 50%이상 차지
자동차 부품	5~15%	5년간 단계적 철폐	

**□ 타이어**

품목	기존 관세율	협정 관세율	특징
타이어	15%	5년간 단계적 철폐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타이어 시장

**□ 석유화학**

품목	기존 관세율	협정 관세율	특징
합성수지	5~15%	5년간 단계적 철폐	

**□ 섬유**

품목	기존 관세율	협정 관세율	특징
섬유제품	15~20%	5년간 단계적 철폐	의류산업 현재 호황

인하여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는 있지만, 향후 FTA 로 인한 효과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발효되어 있는 FTA 이외에도 중국, 일본, 터키, 호주 등과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곧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와의 교역이 지역무협정 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계속적으로 넓어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넓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남 충 모

[cmnam@customsservice.co.kr](mailto:cmnam@customsservice.co.kr)

## Voices From The Fields

#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내용 개관

지난 5월 2일 마침내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의 협상개시 공식선언이 있었다. 지난 '04년 9월 한중 민간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한 후 6년 8개월 만에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식 협상이 돌입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협상테이블에 임함에 있어 중국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의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2일 마침내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의 협상개시 공식선언이 있었다. 지난 '04년 9월 한중 민간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한 후 6년 8개월 만에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식 협상이 돌입하게 된 것이다. 사전에 민간에 이은 산관학 공동연구 등이 이토록 오랫동안 이루어진 배경에는 그만큼 한중간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제 정식으로 협상에 돌입한 이상 의외로 타결이 쉽게 그리고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것도 사실이다. 협상개시 공식선언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5월 14일 북경에서 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이어 7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에서 제 2차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협상이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의 득실을 잘 따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관세장벽은 물론 비관세장벽의 해소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FTA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와 민감 품목들에 대한 양허 이외에도 관세장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분야에 걸쳐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협상테이블에 임함에 있어 중국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의 현행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규제조치**

- ① 수입금지
  - 대외무역법 제 16 조에 따라 매우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 '일반 수입금지 품목\*' 운영과 '중고기전제품 수입금지 목록'을 운영
  - \*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 보호,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목적 등으로 필요한 품목
- ② 수입제한(수입허가)
  - 3종 품종\*에 수입허가증 관리 실시
  - \* 감시대상 화학품,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오존층파괴물질
  - '이중사용물질\* 및 기술'에 대한 수입허가증 관리 실시
  - \* 화학무기생산물 화학원료, 방사성 화학물, 독성물질 제조가 용이한 화학품
  - 그 외 대부분의 제품과 공산품은 자동수입허가증 제도 실시
- ③ 관세할당
  - 7종의 농산품과 화학비료 등에 대한 관세 할당제도를 실시
  - 할당 내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할당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고 세율을 적용

- 주로 농민보호와 국내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함

**2. 기술 장벽**

- ① 강제성 국가표준
  -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장벽
  - GB(국가강제성 품질기준)와 GB/T(국가추천성 품질기준)를 채택
  -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제품은 중국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중국내 판매가 불가능
- ② 독자적인 기술표준
  - 일부 중국 표준방식은 국제표준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생산 시 채택해야 함
  - 유사한 다른 나라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만의 표준을 고집하는 경향 존재
  - ⇒ 무역상 기술 장벽 협정인 TBT(Technical Barriers of Trade) 제 2조제 7항 위배
  - 각 지역마다 인증기준이 상이하게 적용, 인허가에 너무 장시간 소요
- ③ 강제인증제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대상품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 (2002.5월부터 시행)
  - 동일한 HS 품목번호에서 일부 규격품목만이 CCC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규격 품목은 별도로 CCC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음

- 그러나 관련부처와 해관 간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기준 적용 불일치  
 ⇒ 통관 시 해당제품이 인증대상으로 간주되어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 빈번 발생

**3. 환경규제조치**

- ①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
  - 전자정보제품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중금속 물질 등)을 포함한 경우, 제품라벨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 명칭과 함량, 회수이용 가능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EU 등 타국의 유사지침에 비해 포장재, 생산공정에 대한 추가규제, 라벨링 규정 등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과 표시지침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② 수입전자제품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TV 음향설비 등 6개 전자제품들은 중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질량 기술감독국의 전자수용인증 획득하여야 함
- ③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수입제한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외무역법'과 '화물 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한 수입허가증관리 화물목록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함
- ④ 유독 화학품 수출입제한
  -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유독화학품을 수출할 경우, 유독화학품 수출계약서별로 외국기업 명의의 '유독화학품 수입 환경관리등기증'을 신청하여야 함
  - 중국 수입상은 외국기업의 '유독화학품 수입 환경관리등기증'별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 관리 통행허가 통지서'를 신청해야 함

**4. 의약품관련 규제조치**

- ① 의약품 수입에 대한 규제
  - '중국식약품감독관리국'은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입의약품등록제도, 임상시험 기준과 판매유통관리 강화 등 시장진입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실시
  -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이 있으며,
    - 이에 따라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 수입 시, 수입항만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하는 '수입약품통관증'을 해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는 최초로 수입신고를 했던 항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
- ② 의약품 허가심사 시 중국 자체규정 약전 적용 및 임상실험 요구
  - 수입약품 허가심사 시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정 약전을 적용하고, 타국의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의약품 등록 신청 시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시간이 1년 정도 추가 소요됨  
 ③ 화장품 위생허가 및 엄격한 검사 실시
 

- 최초 수입 시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 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서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며, 동일한 생산기업의 동일계열 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별로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생허가증 신청 시 준비서류와 요구사항이 많고 복잡하여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의 적기 수출 및 판매가 어려움

**5. 통관 장벽**

- ① 관세부과 시 공식가격 비공개(기준가격제)
- ② 완성차 및 부품 수입 통관지 제한
  - '04년 발표한'자동차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완성차 수입과 자동차부품 수입 시 통관지를 제한하고 있어 불편 초래
  - 완성차 수입은 대련, 천진, 상해, 황포, 만주리, 심천, 아라산구 등 7개 지역으로 한정
  - 부품수입은 7개 지역과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트, 우루무치, 천진 동향으로 한정
  - 자동차 통관지 제한은 운수물류비용 증가 및 통관시간 지연 등 간접적 수입제한 효과
- ③ 일부 화학품에 대한 보세운송 불허
  - '수출입 보세운송화물 통관제도'에 따라 일부 화학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을 불허
  - \* 화학무기제조용 감시대상 화학품, 오존층 파괴물질,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품 등
  - 도착항에서만 통관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시간과 경비 소모는 물론 불편을 초래
- ④ 이중 세관검사와 과도한 통관심사
- ⑤ 수입신고 지체가산금 부과

**6. 국산화 요구 및 투자 장벽**

- ① 중국산 자동차부품 사용 장려정책
  - 자동차부품 수입 시, 완성차 특징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품관세율(평균 9.5%)이 아닌 완성차관세율(25%)을 적용하여 부과
  - 완성차 특징으로 간주하는 경우
    - 운전석을 포함한 차체, 엔진, 변속기
    - 수입부품 가격이 완성차 총액의 60% 이상일 경우
    - CKD 등 녹다운 상태로 수입할 경우
- ② 자동차산업 신규진입 제한
  - 자동차생산기업의 신규투자 시 투자총액 최소 한도액 설정 및 최소 한도생산물량 규정과 완성차에 장착할 엔진 생산 포함 의무화
  -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사업허가 제동 및 연도별 판매량 제한
  - 전문 자동차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에는 없는 첨단기술 자동차를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신소재와 신공법을 이용해 제품기능을 향상시켜야 함  
 ③ 철강설비 국산화 요구
 

- 해외설비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나 첨단설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중고 생산설비는 도입을 금지
- 국산장비를 이용한 철강 프로젝트는 세수감면 및 R&D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④ 철강 산업의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 외국 철강기업의 투자는 모두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함
- 제강기술의 지재권보유, 자체 유통 및 물류시스템 보유, 기술 이전 의무화 등 일정한 진입조건을 충족해야만 진출가능
- 반드시 중국 내 기존 철강회사와 합작해야 하며, 지배주주는 될 수 없음

**7. 기타 규제조치**

- ① 일관성 없는 법, 제도의 투명성 결여
  - 중국은 법 시행과 집행에 있어 공표되지 않은 법령도 많고 공표된 법령도 입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특히 지방차원의 세칙 등은 어려움이 많음
  - 공포에서 시행까지 여유기간이 짧아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관성이 없음
- ②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중국에서는 짝통, 해적판 등 지재권위반제품에 대한 단속의지와는 별도로 시중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
  - 이러한 짝통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존재(기술수준 발전과 지역경제에 이익)
  - 최근 해관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해 짝통 등 지재권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③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 '03년부터는 공개된 정부구매에 대해서는 외국 공급자들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공개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 그러나 정부구매사업에 대한 외국 공급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는 제한되고 있음
  - 조달대상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중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제품과 중국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공급자는 일부 정부구매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중국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관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

1. 개정이유

개정내용 반영 및 그간 자체 제도 개선하여 시행중인 내용 반영

2. 개정내용

1) 동종·동류비율 산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① 동종·동류비율 등 용어신설

"동종·동류비율"이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② 세관장의 동종·동류비율 산정방법 및 절차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접 산정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분류원의 내규를 고시에 반영

2) 그간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① 시행령 제 16 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4 방법 적용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

②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신고서 교부절차 및 확정가격 사전심사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기간 종료 30 일 이전으로 구체화

3. 시행시기

2012년 7월 1일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원활한 물자수급,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 시 100 분의 40 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내용

① 2012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63개 품목 중 삼겹살 등 42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② 설탕 및 원당 2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③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농축액, 휘발유, 경유, 코크스, 유연처리 우피(牛皮)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8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④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비료용 요소는 적용세율을 1%에서 0%로 추가 인하

⑤ 사료용 근채류는 한계수량을 51만 메트릭톤에서 66만 메트릭톤으로 추가 증량

3. 시행시기

2012년 7월 1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②7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07 관 0023 2009.09.29)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스터디하였다. 각 판례들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신성훈 관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하는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가산요소 중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채권, 채무 상계금액도 포함 하고 있다. 본 결정례에서는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할인 금액이 당사자의 채권, 채무에 대한 상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가산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사건개요(Facts)

1. 처분내용

1) 수입자(청구인)는 수출자로부터 카테고리(쟁점 물품)를 수입함.

2) 해당 카테일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와 수입자는 국내 광고판촉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예: 국내에서 신문광고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광고비용 1,000,000 원 대하여 500,000 원을 수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000 원을 수출자가 부담)

2)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협상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광고판촉비용 중 수출자 부담 부분의 정산목적으로 기존 수입가격에서 병당 0.79 유로만큼 할인 받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

3) 세관(처분청)은 할인액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수입자의 채권)와 수입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수입자의 채무)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

4)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2. 수입자(청구인)의 주장

1) 광고판촉비 분담 계약과는 별도로, 국내시장 약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의 가격협상에 따라 광고판촉비 전액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광고판촉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가격에서 인하는 계약을 체결.

2) 상계금액이라면 채권(수출자 부담 광고판촉비 부담금)과 채무액(수입물품 대금)이 확정되어야 하고 채권액(광고판촉비의 50%)확정을 위하여는 광고판촉비의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과정 없었음.

3) 광고판촉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 대금과 상계 하였다면 병당 할인액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당 일괄적인 할인액을 적용 하였음.

4) 따라서 동 할인액은 수입자가 부담한, 수출자 부담 광고판촉비와 수입대금의 상계 금액이 아닌 별도의 가격협상을 통한 정상적인 할인액이므로 처분은 부당함.

3. 처분청의 주장

1) 수출자와 수입자는 다음 연도 판매계획을 위하여 회의를 통하여 'ACTION POINT'라는 문서로 정리 하며 해당 문서 내에는 광고판촉비의 정산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가격협상으로 볼 수 없음

2) 따라서 동 할인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광고판촉비와 수입대금의 상계액으로서, 이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포함.

□ 쟁점(Issue)

쟁점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 각각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1) 관세법

제 30 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② 제 1 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2) 간접적인 지급액

관세법 제 30 조 2 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②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 3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환런비 또는 외국교육비

④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쟁점 검토

1) 상계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계를 위하여는 수출자 부담분을 확정하기 위한 광고판촉비 집계 및 정산과정이 있어야 하나 단지 'ACTION POINT' 내용 중에 정산 절차가 명시되었다는 점 만으로는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상계를 위한 채권, 채무액의 일치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 채무액이 일치 하여야 하나 할인 금액과 수입자의 채권이 일치 하지 않음. 따라서 동 할인 금액이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부담액과의 상계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정(Holding)

동 할인액은 가격 협상에 의한 정상적인 할인 금액이며,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액으로 볼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영 훈

[\(kimyh@customsservice.co.kr\)](mailto:kimyh@customsservice.co.kr)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